

공증 직역 “우보만리(牛步萬里)” 자세로 확대해 나가야

송 정 호

대한공증인협회 협회장

지난 2011년 한 해를 돌아해보면 우리 협회는 공증법령의 합리화와 공증의 발전을 위하여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던 것 같다.

올해 공증인 정년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럴 경우 ① 공증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신 원로 회원님들의 일시적 퇴직으로 인하여 공증 기반이 붕괴 될 가능성이 있었고, ② 일시 퇴직에 따른 공증서류 인계인수 문제 등 혼란이 예상되었다. 이를 방지하고 공증 정년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목적으로 75세 정년을 한시적이나마 2017년까지 80세로 연장하는 공증인법 개정안이 협회의 발의와 노력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또한 회원가입 강제단체로서의 협회의 자율적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통일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독립성 차원에서 공증부책 인증권한을 검찰청에서 협회로 이관시키는 공증인법 시행령 개정까지 이루어 낸 것은 회원에 대한 작은 권익보호는 물론 협회의 업무 발전을 위하여 큰 성과라고 하겠다.

나아가 우리나라 공증제도에서 또 한 번의 획기적 도약을 가져오게 될 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바로 우리 협회가 1990년대 후반부터 10여 년 동안 꾸준히 제도 도입을 주장해 온 집행증서 범위의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 법무부 제출 공증인법 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개정법률안은 현재 금전·어음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이용할 수 있는 집행증서를 건물이나 토지 등의 인도를 구할 때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더 철저히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개정법률안은 우리 협회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지난해 2월 법무부가 출범시킨 “공증제도개선위원회”의 활동 성과이기도 하다. 동 위원회에서는 협회를 비롯하여 법원, 검찰, 학계 등 법조계 각 분야 전문가 10명이 참여하여 공증제도 전반에 걸친 검토와 연구를 거친 결과, 집행증서 범위 확대라는 소중한 산물을 탄생시킨 것이다. 대륙법계를 대표하는 독일은 1997년도부터, 대만은 1999년도부터 이미 집행증서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었으나, 우리의 경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음에도 공론화되지 못하다가 이번에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앞으로 그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물이나 토지 등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과거 집행증서의 파행적 대응물 역할을 하던 제소전화해를 이용하여 지위가 열악한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강제되는 남용사례를 방지할 수 있고, 재판이 아닌 당사자 간의 계약에 관해 확인하는 공증적 역할로 인하여 업무량이 증가하여 온 법원의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으리라고 예상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이 개정법률안은 제18대 국회 회기 만료를 얼마 두지 않은 채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관계로 계속 잠들어 있다. 돌아오는 총선거 일정 등으로 인하여 국회의 회기가 만료되면 자동 폐기될 염려도 있으나, 가능하다면 총선 후 국회 회기중 통과될 수 있도록 협회에서 적극 노력해 갈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등기 원인행위의 공증제도 의무화 방안과 관련하여 이를 도입할 때 예상되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대한 법경제학적 연구 및 의무화 방안 도입을 위해 필요한 공증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다.

부동산 등기 원인행위의 공증제도 도입에 관해서는 그 대상과 방법, 공증행위의 주체 등의 각론적인 부분에서 여러 의견이 일부 상충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연구용역으로 각 계

각 층의 논의가 앞으로 좀 더 활발해질 수 있고, 그 결과 제도 도입이 머지않은 시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또 2011년의 민법 일부 개정으로 2013년 7월부터 도입되는 성년후견제도에 따른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작성하도록 함에 따라 가족법 분야에서도 점차 공증 직역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

사실 우리 공증제도 직역은 다른 선진 국가들과 비교하면 매우 협소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직역 확대 결실이 하나 둘씩 싹을 틔우고 있는 것에는 오래전부터 선배 공증인들을 비롯한 협회 전임 집행부에서 꾸준히 법무부와 학계·단체 등 관계기관에 공증 직역 확대를 주장하고, 2007년부터는 공증주간 행사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도 예방 사법분야로서의 공증이 얼마나 필요한지 홍보하는 등 끊임 없이 모두가 노력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증직역의 확대와 공증인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는 그 신뢰 확보를 위한 공증인 개개인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비대면 공증이라든지 서명된 말미 용지의 비치 등 공증의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는 행위는 공증인 스스로 철저히 배격해야 하겠다. 공증제도가 분쟁 예방과 거래 선진화에 기여하는 신뢰 받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하여는 공증인의 준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법무부도 공증 사무의 적정성 제고와 신뢰회복을 위하여 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엄중하게 징계하겠다는 방침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우리 협회는 우직한 소의 걸음이 만 리를 간다는 “우보만리(牛步萬里)”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공증제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나아갈 것이다. 속도가 느려 시간이 오래 걸려 보이더라도 우직하게 쉼 없이 걸음걸음을 옮기는 소의 마음가짐으로 임한다면 공증으로 성숙한 신뢰사회 구축이라는 천 리 길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 도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앞으로도 “공증과신뢰”가 공증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